

담양군 화장지원금 지급 조례안 예고

「담양군 화장지원금 지급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6. 10.

담양군의의회 의장



1. 조례명 : 담양군 화장지원금 지급 조례안

2.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설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이 없는 우리 군 여건 상 관외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타 지역 화장장 이용에 따른 군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 2조)
- 나. 화장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화장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사망자에 대한 지원금 시신 1구당 300,000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지원금 유골 1구당 50,000원

라. 신청 및 지급방법,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6, 7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0 ~ 6. 15(5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담양군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전화 : 061-380-3507~8(FAX 061-380-3590)

라. 의견제출 방법 : 전화, FAX, 직접방문, 우편

6. 조례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서식

의견서		
1. 조례안	담양군 화장지원금 지급 조례안	
2. 의견	관련조문	의견
3. 기타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6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담양군의회 의장 귀하		

담양군 화장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양군민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 말한다.
2. “화장지원금”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화장지원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법에 따른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에 안치시킨 연고자에 한한다.

1. 사망일 기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개장신고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군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로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제4조(지급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5조(지급기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제 화장비용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1. 사망자에 대한 지원금 시신 1구당 300,000원
2. 개장 유골에 대한 지원금 유골 1구당 50,000원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화장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화장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기증 등 절차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화장지원금의 지급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화장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화장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지원금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화장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장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망 ☐개장 ☐기타)

화장지원금 지급 신청서 (☐ 사망 ☐ 개장 ☐ 기타)										
사 망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화장장소		사망일시		화장일시					
	안치장소	(시설명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사 망 자 와 의 관 계 의				
	주 소				자 택 : 휴대폰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table border="1" style="float: right; margin-lef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padding: 5px;">연고자 확인</th> </tr> <tr> <td style="padding: 5px;">읍·면 담당공무원</td> <td style="padding: 5px;">직급: 성명: (서명)</td> </tr> </table>							연고자 확인		읍·면 담당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연고자 확인										
읍·면 담당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담양군 화장지원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화장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담양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자(개장시 신고인)의 주민등록초본 2.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이용료 납부영수증 5. 봉안시설 등 안치(봉안)증명서 6. 개장신고증명서 7. 그 밖의 확인자료									

[별지 제2호서식]

화장지원금 지급대장

[illegible]